

재류기간 연장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

재류기간이 설정된 외국인 주민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은 재류기간과 동일합니다.

재류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재류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※재류카드를 갱신하더라도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.

※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은 최대 발행일로부터 10 번째(발급 당시 미성년자는 5 번째) 생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※유효기간 내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마이넘버카드는 실효됩니다. 실효된 경우,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※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한 당일에는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다음 날 이후에 방문해 주세요.

●절차 가능 장소

거주하는 구(區)의 구청 및 종합지소

※마이넘버카드 특설센터(아에루 24F)에서는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●필요한 서류

○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
1. 재류카드(갱신된 것)
2. 마이넘버카드

※4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(주민기본대장용) 입력 필요

○같은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

1. 본인의 마이넘버카드
2. 본인의 재류카드(갱신된 것)
3.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(재류카드, 특별영주자증명서, 마이넘버카드, 주민기본대장카드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※본인의 마이넘버카드에 설정된 4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

●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중이라서 아직 재류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

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재류자격 변경이나 재류기간 연장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, 마이넘버카드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2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.

- 재류카드 뒷면 우측 하단의 "재류기간 갱신 등 허가 신청란"에 "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중" 도장이 찍힌 것
 - 온라인으로 재류기간 변경 허가 신청을 했을 때의 완료 메일을 출력한 것
- ※ 행정서사 등의 대리 신청으로 발급된 보관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